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자료 제공

1. 개정(제정)이유

유망수출산업인 화장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류 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포장규제를 완화하여, 적용 가능한 포장공간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파우치, 에코백 등의 사용에 대해 포장횟수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음료류 제품의 포장횟수 측정방식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화장품류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상향조정(안 시행규칙 별표 1)

현행 화장품류 제품의 종류(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 그밖의 화장품류)를 통합하여 상향 조정된 35%의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고, 종합제품 형태의 화장품류 제품의 고정 및 보호를 위해 고정·완충재를 포함하는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5% 가산하여 적용(10~15% → 35~40%)

나. 화장품류 제품의 포장횟수 기준 완화(안 시행규칙 제7호의2)

2차 포장에 덧붙이는 포장재 및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파우치, 에코백)는 측정 포장횟수에서 제외다. 음료류 제품 포장횟수 기준 완화(안 시행규칙 별표 1)

음료류 제품의 포장횟수를 2회까지 허용(1차 이내 → 2차 이내)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단위제품의 음식료품류란과, 화장품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음식료품류	음료	10% 이하	2차 이내
화장품류	화장품류 (방향제를 포함한다)	35% 이하 (항수 제외)	2차 이내

같은 표 제품의 종류의 종합제품란에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세제류, 신변잡화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세제류, 신변잡화류	25% 이하	2차 이내
------	---	--------	-------

별표 1 비고 제1호 본문 중 “종합제품”을 “종합제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대상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제품 종류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단위제품의 기준을 적용한다)”로 하며, 같은 비고 제7호 중 “단위제품인 화장품의”를 “화장품류 제품의 포장횟수 기준에 대하여, ”로, “필름(투명 필름류만 해당한다)”를 “필름, 종이 등의 포장과 제품가치가 있고 재사용이 가능한 파우치, 에코백”으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화장품류 제품의 보호·고정 및 상품가치 보존을 위하여 완충 또는 고정재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완충·고정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위 표의 포장공간비율에도 불구하고, 포장공간비율 5%를 가산하여 적용한다.(다만,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별표 1의 화장품류 제품 및 비고 제7호 및 제7호의2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KOPA NEWS 신청

(사)한국포장협회에서는 매월 15일 온라인 뉴스레터

‘KOPA NEWS’ 를 제작, 발송합니다.

신청은 이메일로 해주시면 됩니다.

편집실 : (02)2026-8655

E-mail : kopac@chollian.net